

## 경상남도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보조) 채용계획 공고

경상남도의회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(속기보조)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8월 3일

경상남도의회사무처장

### 1. 채용예정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기관	근무처	선발인원	채용직종	주요임무
경상남도 의회사무처 (의사담당관)	경상남도의회 (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)	2명	기간제근로자 (속기보조)	◆ 본회의, 상임위원회, 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속기업무 보조

### 2. 채용조건

○ 채용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육아휴직자의 복직일까지

- 1명 : 계약체결일 ~ '24. 10. 31.(예정)

- 1명 : 계약체결일 ~ '24. 01. 29.(예정)

※ 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또는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채용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

○ 보수 및 근무시간

- 임금 : 85,600원\*(10,700원/시간당) \* 임금적용 기준: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

-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 8시간(09:00 ~ 18:00) \* 휴게시간 : 12:00~13:00

※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,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

### 3. 응시 자격 요건

#### ○ 응시결격사유

-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1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#####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- 가.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나.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.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라.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마.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바.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할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사. 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아. 8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또는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1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2)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자. 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차. 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○ 응시연령 : 18세 이상인 자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

#### ○ 거주지 요건 : ①, ②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

- ① 2022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시험일(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
(단, 같은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  - ②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022년 1월 1일 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
- ※ 행정구역개편 등에 의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주소지 합산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, 거주기간은 “역에 의한 방법”에 따라 계산함(「민법」 제160조)

-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(초본)를 기준으로 함
-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

- 성별, 학력 : 제한 없음
- 필수 자격사항 :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개별 가점부여 요건 및 기준(면접시험일 기준)

가점부여 요건	근무기간	배점
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속기직으로 근무한 경력	24개월 초과	2점
	12개월 초과 ~ 24개월 이하	1점
	6개월 이상 ~ 12개월 이하	0.5점

#### 4. 근거 법령

-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 노동자 인사관리규정」
-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(기간제근로자의 사용)

#### 5. 선발 방법

- 1차 시험 : 서류전형
  - 응시원서 제출자의 응시자격,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후 합격 결정
- 2차 시험 : 면접시험
  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
  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“면접시험 평정표”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해 평가함(총점 100점 기준)
  - 평정요소

평정 요소 (배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 (25)</li> <li>◆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(10)</li> <li>◆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20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(30)</li> <li>◆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15)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	---	--

## ○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

-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면접위원 최고점,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와 개별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
-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
  - 위원의 과반수가 “총점 60점이하” 로 평정한 경우
  -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요소별 배점의 60%이하” 로 평정한 경우

예) 과반수의 위원이 “예의품행 및 성실성” 15점에 대하여 60% 이하인 9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 : 불합격

## ○ 동점자 처리(①, ②, ③ 順으로 적용)

- ① 개별가점 고득점자
  - ② 면접시험 총점 고득점자
  - ③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평정항목 순 고득점자
- ※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30), 노동자로서의 정신자세(25) 등 順

- 추가합격 :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, 선발 취소, 계약해지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시험 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 (예정)	최종 합격자 발표
'22. 8. 3.(수) ~ 8. 10.(수) (7일이상)	'22. 8. 11.(목) ~ 8. 16. (화)	'22. 8. 23.(화)	'22. 8. 29.(월)	'22. 9. 1.(목)~

\*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

⇒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(<https://council.gyeongnam.go.kr>) 에 게시  
(도의회 홈페이지 ⇒ 열린의정 ⇒ 시험정보)

## 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원서교부 :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(<https://council.gyeongnam.go.kr>) 다운로드
- 나. 접수기간 : 2022. 8. 11.(목) ~ 16.(화) 09:00~18:00 ※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
- 다. 접수장소 : 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교육담당(1층)

라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방문(대리접수 가능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<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>

- 주 소 : ☎ 511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(사림동) 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교육담당
- 유효일 : **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**(택배,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)
- 추가서류 : **반신용 소봉투(응시표 수령용)** → 등기용 우표 부착, 수신인 성명·주소 기재

## 8. 재공고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 
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실시
-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

## 9. 제출 서류

### ▶ 공통사항(필수 제출) - 홈페이지 에서 내려 받아 작성

(도의회 홈페이지 ⇒ 열린의정 ⇒ 시험정보) (<https://council.gyeongnam.go.kr>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(붙임양식)
- ② 응시원서 1부 (붙임양식)
  - 사진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(3cmx4m)
- ③ 이력서 1부 (붙임양식)
 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
  - ※ 단,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)
-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붙임 양식)
- ⑤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이력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
  - 붙임 「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」 제출 시 도의회에서 별도 조회
- ⑥ 자기소개서(A4 2장 이내) 1부 (붙임양식)
- ⑦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

## ▶ 개별사항(개별 가점요건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### ① 경력증명서 1부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속기직 근무경력

-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-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
- 경력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서류 별도 첨부(근로계약서, 업무분장 등)
-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 경력 인정 원칙

※ 비정규직(비상근)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(미제출시 불인정)

### ②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(원본)

- 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
- 발급요령 :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를 위해 가입기간을 “전체기간” 선택
- 유의사항 :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

## 10.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변경 공고합니다.
- 나.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.
- 다.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- 라.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마.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응시자격 검증,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

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- 바.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사.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아.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- 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총무담당관(인사교육담당 ☎055-211-70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11.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.
- 나.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하며,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다. 응시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라.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 중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 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